

#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의안번호	4
------	---

제출일자 1998. 1. 14.  
제출자 거창군수

## ■ 개정이유

주차장법에 명시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위탁관리자의 자격 범위를 넓히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 주요골자

-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 자격에 ‘개인’을 삭제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을 추가함
- 주차전용 건축물의 용적율을 1,300%이하에서 1,500%이하로 함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인 [별표 2]를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따르도록 함

## ■ 개정근거

-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노상주차장의 관리)
- 주차장법 제13조 제3항 (노외주차장의 관리)
-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이나 실적이 있는 법인과 비영리 공익법인

제12조 본문중 “영 제2조 제2항”을 “영 제3조의 2”로 하고 동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3. 용적률 : 1천 500퍼센트 이하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은 영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별표 1과 같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p> <p>① (생략)</p> <p>1. (생략)</p> <p>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이나 실적 있는 법인 또는 개인</p> <p>3. (생략)</p>	<p>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과 비영리 공익법인.</p> <p>3. (현행과 같음)</p>
<p>제12조 (주차전용 건축물) <u>영 제2조 제2항</u>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건폐율 : <u>(10분의 9이하)</u></p> <p>2. (생략)</p> <p>3. 용적율 : <u>1천 300퍼센트 이하</u></p>	<p>제12조 (주차전용건축물) <u>영 제3조의 2</u>의 ..... ..... .....</p> <p>1. 건폐율 : <u>100분의 90 이하</u></p> <p>2. (현행과 같음)</p> <p>3. 용적율 : <u>1천 500퍼센트 이하</u></p>
<p>제14조 (<u>주차장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 구역안의 주차장설치</u>)</p> <p><u>영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주차장 정비지구와 도시재개발 구역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u></p> <p><u>[별표 2] (생략)</u></p>	<p>제14조 (<u>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u>)</p> <p><u>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영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별표 1과 같다.</u></p> <p><u>[별표 2] (삭제)</u></p>